



2018년 제4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총176차-

【개회일시】 2018년 12월 21일(금) 16:00

【개회장소】 서울대학교청 별관 1층 대회의실

【참석인원】 이사 9명(정원 9명) / 감사 1명(정원 2명)

출석이사: Bp. 유경춘, Fr. 박경근, Fr. 황경원, 오태경, 심정섭, 전재희, 정태호, 김병근, 김영주 (9명)

출석감사: 김기선 (1명)

배석: Fr. 조용철(법인 부회장), Fr. 이광희(사회사목국 부국장), 엄경숙(다산어린이집 원장), 박상호(꿈손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시설장), 윤미진(헬렌캐러의집 공동생활가정2호 시설장), 김광수(성동노인종합복지관 시설장), 한은경(중곡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 Sr. 이인자(양원구립어르신요양센터 시설장), 법인사무국 담당(관)10명

【의안상정】

제1호 의안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18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

제2호 의안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

제3호 의안 합병 계약 승인 요청의 건

제4호 의안 합병 관련 정관 변경(안) 및 사업계획서·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

제5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시설장 임면(안) 승(추)인 요청의 건

제6호 의안 민간위탁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운영 협약 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운영신청(안) 승인 요청의 건

제7호 의안 법인 임원 증임(안) 승인 요청의 건

제8호 의안 법인 산하 「어린이집 공동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승인 요청의 건

【기타토의 및 보고사항】

법인 「인증시설 운영지침」 개정 보고 건 및 강일성노인요양센터 관련 보고 건

【폐회】

- 1 -

□ 개회 정족수 보고 및 개회 선언

의장은 오후 4시 상임이사의 정족수 보고를 들은 후, 시작기도로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정관 제19조 제2항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한다.

□ 의장 유경춘 인사 말씀

연말인사 바쁜 일정 중에도 본 법인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자리해주시는 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4차 임시이사회에서는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의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요청 등 총 8건의 상정 의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자리이며 각 의안에 대하여 임원분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전자 의사회의록 확인

의장은 출석이사에게 전자회의록에 대한 보완 수정할 부분의 유무를 묻고 출석이사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 회의록을 확정시키다.

의안심의

■ 제1호 의안 :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18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유경춘 : 제1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18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박경근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박경근 : 제1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18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요청하는 시설은 법인 및 68개 시설이며 상정 의안에 대하여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인 및 총 68개 시설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시설	⇒ 6개 시설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시설	⇒ 21개 시설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시설	⇒ 법인 및 39개 시설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제4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 시설	⇒ 2개 시설

- 2 -

○ 상임이사 박경근 : 먼저, 2018년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받은 6개 시설 중 대표로 참석한 영유아복지분야 「다산어린이집」의 엄경숙 시설장께서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예산(A)	1차 추경 예산(B)	증감(B-A) 금액	%	예산(A)	1차 추경 예산(B)	증감(B-A) 금액	%
영유아 (5개)	수업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956,430	1,005,030	48,600	5.1	956,430	1,005,030	48,600	5.1
	직	구 러기통산어린이집	292,365	240,261	-52,104	-17.8	292,365	240,261	-52,104	-17.8
	수업	다산어린이집	1,323,444	1,220,233	-103,211	-7.8	1,323,444	1,220,233	-103,211	-7.8
	수업	성모어린이집(동촌)	461,894	474,009	12,115	2.6	461,894	474,009	12,115	2.6
	수업	해트어린이집	378,557	367,583	-10,974	-2.9	378,557	367,583	-10,974	-2.9
장애인 (1개)	직	비둘기보호작업장	382,988	379,927	-3,061	-0.8	382,988	379,927	-3,061	-0.8
【구분보기】			수업 : 수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 직 : 직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없음.							
			직 : 직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 직 : 직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없음.							

「다산어린이집」, 엄경숙 시설장이 보고를 마칩니다.]

○ 상임이사 박경근 : 다음은 2018년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받은 21개 시설 중 대표로 참석한 장애인복지분야 「헬렌캐러의집 공동생활가정 2호」의 윤미진 시설장께서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예산(A)	2차 추경 예산(B)	증감(B-A) 금액	%	예산(A)	2차 추경 예산(B)	증감(B-A) 금액	%
종합수업 (2개)	수업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의 부설 기관	3,641,755	3,988,857	347,102	9.5	3,641,755	3,988,857	347,102	9.5
	수업	동촌7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병과 부교실	45,080	42,500	-2,580	-5.7	45,080	42,500	-2,580	-5.7
영유아 (10개)	수업	도곡어린이집	1,187,108	1,185,985	-1,123	-0.1	1,187,108	1,185,985	-1,123	-0.1
	수업	목동어린이집	1,054,380	1,012,755	-41,625	-3.9	1,054,380	1,012,755	-41,625	-3.9
	수업	상일어린이집	941,704	922,799	-18,905	-2.0	941,704	922,799	-18,905	-2.0
	수업	송파어린이집	631,957	616,455	-15,502	-2.5	631,957	616,455	-15,502	-2.5
	수업	잠문2동어린이집	783,380	774,080	-9,300	-1.2	783,380	774,080	-9,300	-1.2
수업	예다동보통유아놀이 이		445,223	443,720	-1,503	-0.3	445,223	443,720	-1,503	-0.3

- 3 -

※ 회람의집 : 예산 총액 변동 없음. (관·항·목 변동)

【구분보기】			수업 : 수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 직 : 직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없음.							
			직 : 직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 직 : 직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없음.							

「헬렌캐러의집 공동생활가정2호」의 윤미진 시설장이 보고를 마칩니다.]

○ 상임이사 박경근 : 다음은 2018년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법인사무국 부회장 Fr. 조용철께서 이하 해당 자료를 참조하여 보고해주시고, 이어서 산하 직영·수탁시설 제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을 요청받은 39개 시설 중 대표로 참석한 장애인복지분야 「꿈손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박상호 시설장께서 이하 해당 자료를 참조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제3차 추경예산(A)	제3차 추경예산(B)	증감(B-A) 금액	%	제3차 추경예산(A)	제3차 추경예산(B)	증감(B-A) 금액	%
법	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7,681,572	7,812,972	131,400	1.7	7,681,572	7,812,972	131,400	1.7
		종합수업	1,843,242	1,871,988	28,746	1.6	1,843,242	1,871,988	28,746	1.6
(5개)	수업	신당종합사회복지관	2,471,500	2,573,000	101,500	4.1	2,471,500	2,573,000	101,500	4.1

- 4 -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제2차 추경예산(A)	제3차 추경예산(B)	증감(B-A) 금액	%	제2차 추경예산(A)	제3차 추경예산(B)	증감(B-A) 금액	%
총합	수입	유락종합사회복지관	3,733,925	3,807,557	10,611	0.3	3,733,925	3,807,557	10,611	0.3
		수입 증감종합사회복지관	2,333,234	2,391,774	-2,400	-0.1	2,333,234	2,391,774	-2,400	-0.1
		수입 한일종합사회복지관 부설기관	3,553,455	3,604,348	40,913	1.1	3,553,455	3,604,348	40,913	1.1
		영유아수입마련이월	953,202	957,120	13,918	1.5	953,202	957,120	13,918	1.5
		(5개)작업배출제출이월	233,455	234,455	1,000	0.3	233,455	234,455	1,000	0.3
	수입	서울3단지이월	433,374	432,374	4,000	0.8	433,374	432,374	4,000	0.8
		수입은도이월	554,882	557,616	2,734	0.5	554,882	557,616	2,734	0.5
		수입에도이월	430,455	435,727	-4,728	-1.0	430,455	435,727	-4,728	-1.0
		지식발전지역아동센터	79,180	81,600	2,420	3.1	79,180	81,600	2,420	3.1
		노인수입금천노인종합복지관 부설기관	4,325,400	4,753,816	228,416	5.0	4,325,400	4,753,816	228,416	5.0
(8개)	수입	동작노인종합복지관 부설기관	3,354,282	3,351,708	-2,574	-0.1	3,354,282	3,351,708	-2,574	-0.1
		작업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부설기관	2,333,233	2,333,184	49,981	2.1	2,333,233	2,333,184	49,981	2.1
		직장일성모노인요양원	2,925,347	2,673,016	-252,341	-8.6	2,925,347	2,673,016	-252,341	-8.6
		수입서초노인요양원	5,654,527	5,654,527	40,000	0.7	5,654,527	5,654,527	40,000	0.7
		수입양천여르노인요양원 부설기관	3,031,525	3,033,925	32,399	1.1	3,031,525	3,033,925	32,399	1.1
	수입	고덕양로원	2,043,225	1,831,825	-201,400	-10.1	2,043,225	1,831,825	-201,400	-10.1
		작업시흥4동성당	402,882	402,956	74	0.0	402,882	402,956	74	0.0
		작업시흥4동성당	402,882	402,956	74	0.0	402,882	402,956	74	0.0
		장미노인요양원	1,817,749	1,791,236	-26,513	-1.5	1,817,749	1,791,236	-26,513	-1.5
		(14개)작업금천장애인단기거주시설	379,765	403,328	23,562	6.2	379,765	403,328	23,562	6.2
	지	지디디자리	1,932,247	1,955,333	3,055	0.2	1,932,247	1,955,333	3,055	0.2
		작업바오로교신보호작업장	375,489	365,844	-9,645	-2.6	375,489	365,844	-9,645	-2.6
		작업바오로교신주거보호시설	233,241	230,332	-2,909	-1.3	233,241	230,332	-2,909	-1.3
		직보급자리공동생활가정	67,473	67,473	0	0.0	67,473	67,473	0	0.0
		작업사랑은보호작업장	531,300	533,120	-6,270	-1.2	531,300	533,120	-6,270	-1.2
	지	지사랑은주거보호센터	216,449	217,249	800	0.4	216,449	217,249	800	0.4
		지성빈센트병원	1,347,959	1,342,885	-5,074	-0.4	1,347,959	1,342,885	-5,074	-0.4
		작업신광에의집	332,680	332,537	-143	0.0	332,680	332,537	-143	0.0
		수입중구장애인복지관	1,953,318	1,953,318	0	0.0	1,953,318	1,953,318	0	0.0

- 5 -

[출처: 이사와 감사: 제1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한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제청으로 제1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18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한다.]

제2호 의안: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유영준: 제2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박경근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상임이사 박경근: 제2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을 요청 해온 시설은 총78개(부설기관 포함) 시설로서 임원분들께서는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법인사무국의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발표 후, 이어서 내년 수탁이 만료되는 시설에 있는 시설을 대표하여 참석하신 2개의 발표시설 시설장께서는 순차적으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인 및 총 78개 시설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요청 시설 = 총 78개 시설
-------------------	--

○ 상임이사 박경근: 먼저, 법인의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부회장Fr. 조용철께서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2018년3차 추경예산(A)	2019년 예산(B)	증감(B-A) 금액	%	2018년3차 추경예산(A)	2019년 예산(B)	증감(B-A) 금액	%
법 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7,812,972	7,654,459	-158,513	-2.0	7,812,972	7,654,459	-158,513	-2.0

[법인사무국, 부회장Fr. 조용철 보고를 마친 후,]

○ 상임이사 박경근: 이어서,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본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해온 시설 중 대표로 참석한 종합복지분야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의 한은영 시설장께서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2018년3차 추경예산(A)	2019년 예산(B)	증감(B-A) 금액	%	2018년3차 추경예산(A)	2019년 예산(B)	증감(B-A) 금액	%
총 합	복 지	중구종합사회복지관	2,333,774	2,333,102	-44,672	-1.9	2,333,774	2,333,102	-44,672	-1.9

[「중구종합사회복지관」 한은영 시설장이 보고를 마친다.]

- 7 -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제2차 추경예산(A)	제3차 추경예산(B)	증감(B-A) 금액	%	제2차 추경예산(A)	제3차 추경예산(B)	증감(B-A) 금액	%
장애인	직	직업활동지원센터	53,931	61,415	424	0.7	53,931	61,415	424	0.7
		직업활동지원센터	406,176	423,033	16,917	4.2	406,176	423,033	16,917	4.2
		직업활동지원센터	195,044	195,771	1,727	0.9	195,044	195,771	1,727	0.9
		여성작업마련자리	711,146	711,300	154	0.0	711,146	711,300	154	0.0
		(2개)작업활동지원센터	360,771	353,046	-7,725	-2.1	360,771	353,046	-7,725	-2.1
노년	수입	서울시여성보호센터	2,913,050	2,925,189	12,139	0.4	2,913,050	2,925,189	12,139	0.4
		(3개)작업활동지원센터	141,214	146,174	4,960	3.5	141,214	146,174	4,960	3.5
		수입시흥은평의마을	11,051,411	10,633,335	-388,016	-3.5	11,051,411	10,633,335	-388,016	-3.5
		수입시설복합도매점	223,643	223,133	9,490	4.1	223,643	223,133	9,490	4.1
		(1개)수입시설복합도매점	223,643	223,133	9,490	4.1	223,643	223,133	9,490	4.1

※ 보금자리공동생활가정·중구장애인복지관: 예산 총액 변동 없음. (한·한·목 변동)

구분	비고	수입	수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수	수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없음
		작업	직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직	직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없음

[「법인사무국」 부회장Fr. 조용철, 「금천장애인단기거주시설」 박상호 시설장이 보고를 마친다.]

○ 상임이사 박경근: 마지막으로 2018년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제4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해온 2개 시설 중 대표로 참석한 노인복지분야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의 김광수 시설장께서 이하 해당 자료를 참조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특 언
			제2차 추경예산(A)	제3차 추경예산(B)	증감(B-A) 금액	%	제2차 추경예산(A)	제3차 추경예산(B)	증감(B-A) 금액	%	
노인	수입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부설기관	3,606,279	3,618,044	11,765	0.3	3,606,279	3,618,044	11,765	0.3	105
		시초남수향보통노인회 부설기관	5,444,914	5,433,272	-5,642	-0.1	5,444,914	5,433,272	-5,642	-0.1	106
【구분보기】			수입	수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작업	직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	수	수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작업	직영시설, 법인전입금 지원	없음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의 김광수 시설장이 보고를 마친다.]

○ 의장 유영준: 제1호 의안의 승인 요청을 해온 시설들을 대표해 본 이사회에 함께해 주신 시설장들님께 감사드리며 임원분들께서는 해당 의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

○ 상임이사 박경근: 마지막 순서로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본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 해온 시설 대표로 참석한 노인복지분야 「양천구립여르노인요양원」의 Sr. 이인자 시설장께서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2018년3차 추경예산(A)	2019년 예산(B)	증감(B-A) 금액	%	2018년3차 추경예산(A)	2019년 예산(B)	증감(B-A) 금액	%
노 인	수입	양천구립여르노인요양원 부설기관	3,063,925	3,293,859	229,934	7.5	3,063,925	3,293,859	229,934	7.5

[「양천구립여르노인요양원」 Sr. 이인자 시설장이 보고를 마친다.]

■ 발표시설 외 76개 시설의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단위: 천원)

분야	구분	시 설 명	세 입				세 출			
			2018년 추경예산(A)	2019년 예산(B)	증감 (B-A) 금액	%	2018년 추경예산(A)	2019년 예산(B)	증감 (B-A) 금액	%
총 합 유치부	(6개)	수입 동작종합사회복지관	1,871,938	1,867,310	-4,628	-0.2	1,871,938	1,867,310	-4,628	-0.2
		수입 동작7종합사회복지관 부설기관	2,635,300	2,616,350	-18,950	-0.7	2,635,300	2,616,350	-18,950	-0.7
		수입 삼계종합사회복지관 부설기관	3,598,857	3,728,715	129,858	3.6	3,598,857	3,728,715	129,858	3.6
		수입 신당종합사회복지관	2,573,000	2,475,000	-98,000	-3.8	2,573,000	2,475,000	-98,000	-3.8
		수입 유락종합사회복지관	3,807,567	3,711,438	-96,129	-2.5	3,807,567	3,711,438	-96,129	-2.5
		수입 한일종합사회복지관 부설기관	3,604,348	3,766,800	162,452	4.5	3,604,348	3,766,800	162,452	4.5
영유아 수업	(2개)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005,060	1,272,958	267,898	26.7	1,005,060	1,272,958	267,898	26.7
		직배드논	286,855	258,855	-28,000	-9.8	286,855	258,855	-28,000	-9.8
아 동 청소년	(3개)	수업 동진동청소년교과방	78,220	76,890	-1,330	-1.7	78,220	76,890	-1,330	-1.7
		지식넷빌지역아동센터	81,600	82,690	1,090	1.3	81,600	82,690	1,090	1.3
노 인	(20개)	지식유리들의공부센터	219,764	208,066	-11,698	-5.3	219,764	208,066	-11,698	-5.3
		수업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부설기관	4,753,816	4,859,389	105,573	2.2	4,753,816	4,859,389	105,573	2.2
		수업 동작노인종합복지관 부설기관	3,361,708	3,243,162	-118,546	-3.5	3,361,708	3,243,162	-118,546	-3.5
		작업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부설기관	2,388,184	2,369,988	-18,196	-0.8	2,388,184	2,369,988	-18,196	-0.8
		수업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부설기관	3,618,044	3,517,389	-100,655	-2.8	3,618,044	3,517,389	-100,655	-2.8
		지식강일동노인요양원	2,673,006	2,826,965	153,979	5.8	2,673,006	2,826,965	153,979	5.8
수업		서초노인요양원	5,694,527	6,416,919	722,392	12.7	5,694,527	6,416,919	722,392	12.7
		수업 시흥고덕양로원	1,836,826	2,029,471	192,645	10.5	1,836,826	2,029,471	192,645	10.5

분야	구분	시설명	세입				세출			
			2018년 추경예산(A)	2019년 예산(B)	증감 (B-A) 금액	%	2018년 추경예산(A)	2019년 예산(B)	증감 (B-A) 금액	%
노인	지곡이케어성당	현역노인케어센터	494,018	513,286	19,268	3.9	494,018	513,286	19,268	3.9
		고령자복지회관	415,000	418,604	3,604	0.9	415,000	418,604	3,604	0.9
		구곡이케어성당	464,175	480,636	16,461	3.5	464,175	480,636	16,461	3.5
		구곡이케어성당	400,459	424,789	24,330	6.1	400,459	424,789	24,330	6.1
		구곡이케어성당	502,194	507,852	5,658	1.1	502,194	507,852	5,658	1.1
		구곡이케어성당	402,956	417,566	5,010	1.2	402,956	417,566	5,010	1.2
		구곡이케어성당	486,561	489,776	3,215	0.7	486,561	489,776	3,215	0.7
		구곡이케어성당	493,771	523,471	29,700	6.0	493,771	523,471	29,700	6.0
		구곡이케어성당	516,552	528,909	12,357	2.4	516,552	528,909	12,357	2.4
		구곡이케어성당	498,116	567,994	69,878	14.0	498,116	567,994	69,878	14.0
		구곡이케어성당	459,120	471,251	12,131	2.6	459,120	471,251	12,131	2.6
		구곡이케어성당	547,816	583,721	35,905	6.6	547,816	583,721	35,905	6.6
		구곡이케어성당	550,000	634,000	84,000	15.3	550,000	634,000	84,000	15.3
		구곡이케어성당	1,791,236	2,230,378	439,142	24.5	1,791,236	2,230,378	439,142	24.5
		구곡이케어성당	403,328	390,166	-13,162	-3.3	403,328	390,166	-13,162	-3.3
		(35%)	지곡이케어성당	구곡이케어성당	357,947	299,520	-58,427	-16.3	357,947	299,520
구곡이케어성당	66,836			68,305	1,469	2.2	66,836	68,305	1,469	2.2
구곡이케어성당	80,100			72,870	-7,230	-9.0	80,100	72,870	-7,230	-9.0
구곡이케어성당	61,767			57,658	-4,109	-6.7	61,767	57,658	-4,109	-6.7
구곡이케어성당	70,275			72,808	2,533	3.6	70,275	72,808	2,533	3.6
구곡이케어성당	1,965,503			1,966,903	1,400	0.1	1,965,503	1,966,903	1,400	0.1
구곡이케어성당	89,062			80,022	-9,040	-10.2	89,062	80,022	-9,040	-10.2
구곡이케어성당	84,786			87,800	3,014	3.6	84,786	87,800	3,014	3.6
구곡이케어성당	366,844			348,456	-18,388	-5.0	366,844	348,456	-18,388	-5.0
구곡이케어성당	230,302			277,699	47,397	20.6	230,302	277,699	47,397	20.6
구곡이케어성당	67,473			68,804	1,331	2.0	67,473	68,804	1,331	2.0
구곡이케어성당	379,927			348,753	-31,174	-8.2	379,927	348,753	-31,174	-8.2

- 9 -

분야	구분	시 설 명	세 입				세 출				
			2018년 추경예산(A)	2019년 예산(B)	증감 (B-A) 금액	%	2018년 추경예산(A)	2019년 예산(B)	증감 (B-A) 금액	%	
장예인	직주	비주 돌 시 기 사 간 보 호 소 본 호 작 업 선 신 작 업 선	215,870	192,094	-23,776	-11.0	215,870	192,094	-23,776	-11.0	
	직주	비주 돌 시 기 사 간 보 호 작 업 선	533,120	541,435	8,315	1.6	533,120	541,435	8,315	1.6	
	직주	비주 돌 시 기 사 간 보 호 작 업 선	217,249	214,860	-2,389	-1.1	217,249	214,860	-2,389	-1.1	
	직주	비주 돌 시 기 사 간 보 호 작 업 선	83,623	76,240	-7,383	-8.8	83,623	76,240	-7,383	-8.8	
	직주	비주 돌 시 기 사 간 보 호 작 업 선	92,548	85,798	-6,750	-7.3	92,548	85,798	-6,750	-7.3	
	수입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1,959,318	1,683,409	-275,909	-14.1	1,959,318	1,683,409	-275,909	-14.1	
	수입	서울시립한울재정 보센터 및 부속기관	5,861,792	5,409,062	-452,730	-7.7	5,861,792	5,409,062	-452,730	-7.7	
	직주	성인보호센터정 리	1,342,885	1,268,573	-74,312	-5.5	1,342,885	1,268,573	-74,312	-5.5	
	직주	성인보호센터정 리	339,796	354,494	14,698	4.3	339,796	354,494	14,698	4.3	
	직주	성인보호센터정 리	72,758	75,997	3,239	4.5	72,758	75,997	3,239	4.5	
	수입	시설운영관리비	5,495,844	5,492,859	-2,985	-0.1	5,495,844	5,492,859	-2,985	-0.1	
	직주	신원보증금	85,410	94,867	9,457	11.1	85,410	94,867	9,457	11.1	
	직주	신원보증금	392,537	374,959	-17,578	-4.5	392,537	374,959	-17,578	-4.5	
	직주	연회비보증금	55,064	57,356	2,292	4.2	55,064	57,356	2,292	4.2	
(3개)	직주	부속기관운영 비	276,769	275,593	-1,176	-0.4	276,769	275,593	-1,176	-0.4	
	직주	한울재정보센터 운영비	69,965	70,613	648	0.9	69,965	70,613	648	0.9	
	직주	발전기유지보 수	251,640	239,986	-11,654	-4.6	251,640	239,986	-11,654	-4.6	
	직주	발전기유지보 수	60,415	59,655	-760	-1.3	60,415	59,655	-760	-1.3	
	직주	발전기유지보 수	39,139	57,822	18,683	47.7	39,139	57,822	18,683	47.7	
	직주	발전기유지보 수	423,093	401,469	-21,624	-5.1	423,093	401,469	-21,624	-5.1	
	직주	발전기유지보 수	196,771	191,942	-4,829	-2.5	196,771	191,942	-4,829	-2.5	
	여성	직주	마음자력	711,300	690,626	-20,674	-2.9	711,300	690,626	-20,674	-2.9
	(3개)	직주	성가정일원	2,270,261	2,040,468	-229,793	-10.1	2,270,261	2,040,468	-229,793	-10.1
	직주	화해의집	353,046	377,904	24,858	7.0	353,046	377,904	24,858	7.0	
노숙인	수입	시설시설보조	2,925,189	2,794,205	-130,984	-4.5	2,925,189	2,794,205	-130,984	-4.5	
	(3개)	수입	시설시설보조	10,663,395	9,631,758	-1,031,637	-9.7	10,663,395	9,631,758	-1,031,637	-9.7
	직주	우리집	146,174	125,510	-20,664	-14.1	146,174	125,510	-20,664	-14.1	
의도	(3개)	수입	시설시설보조	2,557,490	2,577,126	19,636	0.8	2,557,490	2,577,126	19,636	0.8

- 10 -

분야		구분	시 설 명	세 입				세 출			
				2018년 추경예산(A)	2019년 예산(B)	증감 (B-A) 금액	%	2018년 추경예산(A)	2019년 예산(B)	증감 (B-A) 금액	%
의료	지 곡 이 케 어 성 당	의 료 의 집	2,562,664	2,615,664	53,000	2.1	2,562,664	2,615,664	53,000	2.1	
			206,626	191,900	-11,726	-5.8	206,626	191,900	-11,726	-5.8	
			239,133	231,557	-7,576	-3.2	239,133	231,557	-7,576	-3.2	
주 드 (1개)			수법성복주드마켓	239,133	231,557	-7,576	-3.2	239,133	231,557	-7,576	-3.2
【구분보기】			수법 : 수막시설, 법인전임금 지원 / 직책 : 직역시설, 법인전임금 지원				수 : 수막시설, 법인전임금 지원 없음 / 직 : 직역시설, 법인전임금 지원 없음				

○ 의장 유영준 : 제2호 의안의 승인 요청을 해온 시설들을 대표해 본 이사회에 함께해 주신 시설장들님께 감사드리며 임원분들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이사와 감사는 제2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복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한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정으로 제2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며 2019년의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이 지의 사회현장에서 그 목적인 바에 합당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법인사무국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다.]

제3호 의안 : 합병 계약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유영준 : 제3호 의안인 합병 계약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박경근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박경근 : 제3호 의안인 합병 계약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흡수 합병 취지서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이하 "사회복지회"라 함)와 사회복지법인 대건문화재단(이하 "대건문화재단"이라 함)은 다음 취지로 사회복지회가 대건문화재단을 흡수합병하고, 대건문화재단은 해산하기로 한다.

합병 사유

1. 해산법인 대건문화재단은 1993년 7월 7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강성당 건축기금 중 일부등 출연받아 '그리스도의

- 11 -

복음 정신과 사회복지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인간발전을 기본목표로 사회복지와 문화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과 복지문화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용산구 이촌동 한강성당 내에 설립되었다.

- 대건문화재단은 설립 후 별도의 기부금이나 출연금 없이 설립시의 기본재산(514,569,000원)을 기본으로 은행의 이자 수익만으로 법인의 복지사업(불우이웃 돕기 등)을 하였습니다. 최근 은행 이자율의 하락으로 수익이 감소(연 1.3%)되어 더 이상 사회복지법인의 사업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사정이다.
- 가톨릭교회의 지역주의원칙(1교구 1사회복지법인)이라는 가톨릭교회의 전통을 따라 기본재산 규모면에서나 사업 규모면에서도 대건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대부분은 사회복지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포함되므로 흡수합병을 통해 그 동안 용산구 이촌동 지역으로 제한되던 대건문화재단의 사회복지사업의 범위가 서울시 전체(서울대교구 전체)로 확대됨으로써 오히려 사회복지법인 정신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합병의 효과

사회복지회가 대건문화재단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사회복지회는 대건문화재단의 대내외적인 권리와 지위를 승계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승계

대건문화재단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합병효과발생일에 사회복지회에 각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귀속한다. (대건문화재단의 회계장부 참조)

2. 채권채무승계

사회복지회는 대건문화재단의 채권과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나, 대건문화재단은 대외적인 채권 채무가 없으므로 사회복지회가 별도로 승계할 채권, 채무가 없다. (신용정보보조서 참조)

정관, 의 변경

법령과 같이 변경한다.

- 12 -

합병 계약서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이하 "사회복지회"라 함)와 사회복지법인 대건사회복지문화재단(이하 "대건문화재단"이라 함)은 합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합병방법) "사회복지회"는 "대건문화재단"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대건문화재단"은 해산한다.

제2조(자산 및 권리, 의무의 인계와 승계) "대건문화재단"은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회계장부와 정관상 기본재산목록을 기초로 합병 효과 발생일까지의 수입지출을 가감하여 "사회복지회"에 인계하고 "사회복지회"는 이를 승계한다.

제3조(합병승인 이사회 기일)

"사회복지회"와 "대건문화재단"은 2018년 12월 21일을 기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여 본 약정을 승인하고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다만, 합병절차의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회"와 "대건문화재단"의 협의에 의하여 이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선관의무)

"사회복지회"와 "대건문화재단"은 본 약정 체결 후 합병효과 발생일에 이르기까지 선관자의 주의의무로 업무를 집행하고 모든 재산을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또 그 재산 및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회복지회"와 "대건문화재단"이 협의하여 합의한 다음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

본 약정 체결 후 합병효과 발생일까지 사이에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회복지회" 또는 "대건문화재단"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사회복지회"와 "대건문화재단"이 협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6조(합조사항)

본 약정 이외에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약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회"와 "대건문화재단"의 대표자간의 협의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제7조(계약의 효력발생)

본 약정은 "사회복지회"와 "대건문화재단"의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단 합병을 함에 관해 결정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정하는 관제관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위 계약성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회복지회"와 "대건문화재단"의 대표자가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2월 20일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60 (명동2가)
대표이사 유 경 춘

사회복지법인 대건사회복지문화재단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81길 38 (이촌동)
대표이사 최 정 진

○ **의장 유경춘** : 임원분들께서는 제3조 의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이사과 감사는 제3조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한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정으로 제3조 의안인 합병 계약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한다.]

제4조 의안 : 합병 관련 「정관」 변경(안) 및 사업계획서·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유경춘** : 제4조 의안인 합병 관련 정관 변경(안) 및 사업계획서·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박경근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박경근** : 제4조 의안인 합병 관련 정관 변경(안) 및 사업계획서·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관」 변경(안)

□ 「정관」 변경 사유

1. 「정관」 제5조(사업)의 변경

- 본 회가 사회복지법인 대건사회복지문화재단(피흡수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종래 피흡수법인이 수행한 사업을 본회의 사업으로 승계하여 수행할 것인가를 검토하면서 정관상 목적사업조정이 필요
- 정관상 사업내용이 중복되거나 현재 수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을 정리하면서 정관상 목적에서 삭제

2.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사회복지관련 법령의 적용 및 기타 사항에 따른 「정관」 변경

□ 「정관」 변경(안)의 주요 내용

「정관」 변경(안) 주요 내용

- 제5조(사업) 제2항의 경우 수익사업관련 조항-비영리법인에서의 수익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7장에 신설할 것을 서울특별시에서 요청받아 반영
- 제6조(자산의 구분)에서 부동산의 경우 기부·매입 등 그 취득원인을 불문하고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기본 재산임을 명시
- 제16조(임원의 임기)에서 제2항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을 반영하여 변경
- 제29조(간이재산의 귀속)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1항을 반영하여 변경
- 제30조(준용법규)에서 2018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정관 표준안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거를 마련

※ 이하 「정관」 변경(안) 본문 참조.

정관 변경(안) 본문		
현 행	변 경 (안)	사 유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5조 (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연구, 조력, 지원 2. 영유아, 불우 청소년, 여성,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도·육성 3. 사회복지관계 기관과의 협력사업 4. 지역사회복지개발사업 및 자원봉사자활동 등 조력 5. 인간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복지활동 6. 긴급재난복구와 구호사업 7. 공제사업 및 사회복지 후원사업 8. 협동복지사업 9. 사회복지와 관련된 의료사업 10. 사회복지와 관련된 장학사업 11. 국내입양사업 1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13. 요양보호사양성교육원 설치 및 운영 14. 교정시설 수용자 교정복지사업 15.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후원 및 자립지원사업 16.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이 법인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6. 변동없음. 7. 사회복지 후원사업 8. 협동복지사업 9. 사회복지와 관련된 의료사업 10. 사회복지와 관련된 장학사업 11. 국내입양사업 1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13. 요양보호사양성교육원 설치 및 운영 14. 교정시설 수용자 교정복지사업 15.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후원 및 자립지원사업 16.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4318호)에 의한 위기상황에 있는 '초·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지원 (신설) 17.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삭제 [신설 추가] 제16조 ※사유: 피 흡수법인인 대건사회복지문화재단의 사업 중 주요사업인 입양, 민법, 비소속자 결정 및 입양에 관한 규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삭제] 제2항 삭제 ※사유: 수익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장으로 신설	[삭제] ① 용어 삭제 ※사유: 제2항이 별도 제7장으로 이동되어 불필요 [변경] 7호 변경 공제사업 및 사회복지 후원사업 = 사회복지 후원사업 ※사유: 공제사업의 경우 현재 본 회가 수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으로 삭제 [신설 추가] 제16조 ※사유: 피 흡수법인인 대건사회복지문화재단의 사업 중 주요사업인 입양, 민법, 비소속자 결정 및 입양에 관한 규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변경] 16호 = 17호로 변경 ※사유: 목적사업 추가 등으로 연번 변경 [삭제] 제2항 삭제 ※사유: 수익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장으로 신설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표 1의 기본재산목록에 등재된 다음의 재산으로 한다.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변동없음. ② 기본재산은 별표 1의 기본재산목록에 등재된 다음의 재산으로 한다. 1. 변동없음	[변경] 제2항 본문 용어 변경 (별표 1-1 = 별표 1) [변경] 제2항 2호 변경 이 법인의 사업목적에 한동하는 인

정관 변경(안) 본문		
현 행	변 경 (안)	사 유
1.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중여한 재산 2. 이 법인의 사업목적에 한동하는 인사가 기부하는 부동산 및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 결의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2. 부동산 및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 결의한 재산 ③ 변동없음	사기 기부하는 부동산=부동산 ※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 관련 부동산은 기부하는 재산이든 그 취득원인을 불문하고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기본재산임을 반영.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보선된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임기가 개시된다.	[변경] 제2항 변경 ※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4항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음.
제29조 (간이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 그 잔여재산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주주 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다.	제29조 (간이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다.	[변경] ※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1항 반영
신 설	제30조 (수익사업) 이 법인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1. 부동산사업임	[신설] ※사유: 수익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장으로 신설. 또한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의 용도를 명확히 명시하기 위함.
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제7장 추가로 인해 연번 변동
제30조 (준용법규) 이 법인의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비소속자 결정 및 입양에 관한 규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31조 (준용법규) 이 법인의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변경] ※사유: 제30조(수익사업) 추가로 조 변경 및 제30조(준용법규)=제31조(준용법규)로 변경됨. 또한, 2018년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의 정관 표준안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추가
제31조 (재규정) 이 정관의 시행, 기타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규칙, 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 (재규정) 이 정관의 시행, 기타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규칙, 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변경] ※사유: 제31조(재규정)의 조번을 제32조(재규정)으로 변경

■ 「정관」상 기본재산목록 변경

기 본 재 산 변 경 사 항				
종 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1	현 금	127,011,086원	589,980,737원	① 옥수구역 청산금 입금 18,040,651원 ② 재산양도(성북동 1-65 외)법인세 지출 -69,640,000원 ③ 파울수 합병으로 입금 514,569,000원
	소 계	127,011,086원	589,980,737원	
2	부 동 산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산152 외 48건	변동없음	
	소 계	43,086,669,367원	43,086,669,367원	
총 합계(1+2)		43,213,680,453원	43,676,650,104원	

[사업명]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1. 목적

본 회 등록시설이나 서울대학교 내 본당 추천을 통해 지역 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생활비나 긴급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2. 목표

[목표 1] 본당 및 본회 등록시설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추천받아 지원한다.

하위 1. 본당 및 본회 등록시설로부터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5명을 추천한다.

[목표 2] 본당 및 본회 등록시설은 추천 대상자를 적극 관리, 지원한다.

하위 1. 본당 및 본회 등록시설은 추천 대상자에게 긴급/지원비를 계획에 따라 지급한다.

하위 2. 본당 및 본회 등록시설은 본회에 대상자 지원 기간 동안 월 1회 대상자의 현황을 보고한다.

3. 사업 내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 역 사 회 내 소 외 계 층 발 굴 및 지 원	대 상 본 회 등록시설 및 본당 추천의 경제·사회적 소외계층

- 17 -

2) 세출

(단위:원/월)

사업명	항목	산출내역	금 액	계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대상자 지원	■ 대상자 생활비 등 100,000×3명×12개월=3,600,000 ■ 대상자 의료비 등 1,200,000×2명=2,400,000	6,000,000	6,000,000
총 계				6,000,000

○ 의장 유경춘 : 임원분들께서는 제4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이사와 감사는 제4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한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정으로 제4호 의안인 합병 관련 정관 변경(안) 및 사업계획서·예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한다.]

■ 제5호 의안 :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시설장 임면(안) 승(추)인 요청의 건

○ 의장 유경춘 : 제5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시설장 임면(안) 승(추)인 요청 건에 대하여 박경근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박경근 : 제5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시설장 임면(안) 승(추)인 요청 건에 대하여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면직 승(추)인의 건

구분	시설명	성명	직책	면직일자	면직사유	비고
직영	회암의집	서.오선희	시설장	2018.11.30.	소속 수녀회(성가소비녀회) 소임 이동	
수탁	시립고덕양로원	이 현 숙	원 장	2018.12.31.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사직	

■ 임명 승인의 건

구분	시설명	성명	직책	임명일자	임명사유	비고
직영	회암의집	서.실경옥	시설장	2018.12.01.	소속 수녀회(성가소비녀회) 소임 이동	

* 시립고덕양로원 :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방과후 사무공간이 완강 직후 대령 (현재 채용정보 중에 있으며 사립사(이)원회 개회 예정)

[이하 p.20 ~ p.21] 인사기록카드 참조

- 19 -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 역 사 회 내 소 외 계 층 발 굴 및 지 원	시 기 연중
	목 표 본당 및 등록시설의 지역 내 경제적, 의료적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례 발굴·지원
	목 표 량 5명 / 38건
	내용/방법 ■ 본당 및 본회 등록시설에 사업 안내 및 대상자 추천 ■ 추천 대상자에 대한 내부심의 및 선정 ■ 추천 기관(본당, 사설)에 지원금 지급(추천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지원금 전달)
	기대효과 ■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에 생활비나 의료비 지원을 통해 대상자의 경제적·심리적 안정 도모
	가 치 인간존엄성, 보조선, 연대
본 당 · 시 설 의 대 상 자 관 리	예 산 6,000천원
	대 상 본 회 등록시설 및 본당(추천기관)
	시 기 연중
	목 표 본 회 등록시설 및 본당의 대상자 사례관리
	목 표 량 5명 / 38건
	내용/방법 ■ 추천 본당 및 시설 담당자의 대상자 사례관리 ■ 추천 본당 및 본회 등록시설의 대상자 사례관리 피드백 공유(매월 지원금 수령 ■ 영수증, 사례관리일지를 본회로 송부)
	기대효과 ■ 소외계층에 긴급생활비·의료비지원을 통해 대상자의 경제적·심리적 안정과 자립 도모
	가 치 연대, 전문성
	예 산 예산 없음

4. 예산

(단위:원/월)

사업명	항목	산출내역	금 액	계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기본재산 수 입		6,000,000	6,000,000
총 계				6,000,000

- 18 -

○ 의장 유경춘 : 임원분들께서는 제5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이사와 감사는 제5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한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재정으로 제5호 의안인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시설장 임면(안) 승(추)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한다.]

■ 제6호 의안 : 민간위탁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운영 협약 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운영신청(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유경춘 : 제6호 의안인 민간위탁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운영 협약 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운영신청(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박경근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박경근 : 제6호 의안인 민간위탁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운영 협약 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운영신청(안) 승인요청 건에 대하여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명 (시설장 성명)	시설 개요	위·수탁운영 기간 만료일	관 할 지자체
동 작 종 합 사 회 복 지 전 (노 명 래)	 ■ 소재 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자동 47 (건물 1,172.43㎡ / 지하 1~지상 3층) ■ 이용인원: 연133,670명 ■ 종 사 자: 정규직 20명, 비정규직 6명 ■ 목적사업: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과 가족의 기능 강화 추진 및 주민 상호간의 연대감 조성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의 예방 치료하고자 사례관리, 가족기능강화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지원사업, 노인복지사업, 지역조직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현황인정인원: 연 11,000,000원 ■ 최초수탁: 2012년 1월 1일	2019.12.31. (2015.01.01.~2019.12.31./5년)	동작구

- 22 -

민간위탁사회복지시설의 위 수탁운영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운영신청(안)			
시설명 (시설장 성명)	시설 개요	위수탁운영 기간 만료일	관 할 지자체
중촌7종합 사회복지관 (이철우)	■ 복지분야: 지역사회복지 ■ 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3길 104 (건물 1,846㎡ / 지상1-3층)  ■ 이용인원: 연154,149명 ■ 종사자: 정규직 28명, 비정규직 7명 ■ 목적사업: 그리스도의 복음정신에 따라 변화하는 지역특성과 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함께하고자 한다. / 사례관리기능(사례발굴 및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서비스제공기능(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원지원 등), 지역조직화기능(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 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어르신집 운영, 기타 구민의 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구가 요청하는 사업 등 수행 ■ 재법인원입금: 연 1,200,000원 ※ 최초수탁: 2008년 10월 28일	2019.06.30. (2016.07.01. ~2019.06.30. / 3년)	강서구
	 ■ 소재지: 서울시 평진구 용마산로 3길 62 (건물 1,744.68㎡ / 지하 1층, 지상1-4층) ■ 이용인원: 115,980명	2019.06.30. (2016.07.01. ~2019.06.30. / 3년)	광진구

- 23 -

민간위탁사회복지시설의 위 수탁운영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운영신청(안)			
시설명 (시설장 성명)	시설 개요	위수탁운영 기간 만료일	관 할 지자체
중곡종합 사회복지관 (한은경)	■ 종사자: 정규직 19명, 비정규직 4명 ■ 목적사업: 사회복지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주민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과 치료능력을 배양시키고 주민의 참여와 연계를 통해 자조적인 서비스 지지망을 구축하고 특히 저소득 가정, 한부모 가정, 조부모손자녀가정에 대한 다차원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가족기능강화와 회복을 도모하여 아름다운 지역사회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한다. ■ 재법인원입금: 연 1,200,000원 ※ 최초수탁: 2016년 7월 1일 	2019.10.20. (2014.10.21. ~2019.10.20. / 3년)	양천구
	■ 소재지: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11길 16(건물 1,309.3㎡ / 지하 1층, 지상1-5층) ■ 이용인원: 연간42,706명 ■ 종사자: 정규직 26명, 비정규직 18명 ■ 주요사업: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과 가족의 기능 강화 추진 및 주민 상호간의 연대감 조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고자 사례관리, 가족기능강화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자원지원사업, 노인특화사업, 지역조직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재법인원입금: 연 1,200,000원 ※ 최초수탁: 2005년 10월 21일	2019.12.31. (2017.01.01. ~2019.12.31. / 3년)	성북구

- 24 -

민간위탁사회복지시설의 위 수탁운영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운영신청(안)			
시설명 (시설장 성명)	시설 개요	위수탁운영 기간 만료일	관 할 지자체
성북푸드마켓 (Sr. 강옥자)	■ 소재지: 서울시 성북구 아리랑로 27-3 (건물 149.75㎡ / 지하 1층, 지상 2-3층 / 2555㎡) ■ 이용인원: 연간18,700명 ■ 종사자: 정규직 2명 ■ 목적사업: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야간공부방 운영 ■ 재법인원입금: 연 1,200,000원 ※ 최초수탁: 1990년 1월 1일 	2019.12.31. (2015.01.01. ~2019.12.31. / 5년)	성북구
	■ 소재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3길 67 (건물 164.02.3㎡ / 지상1층) ■ 등록회원: 518명 ■ 종사자: 정규직 2명 ■ 목적사업: 성북구 내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 발급자, 긴급지원 가정, 저소득가정, 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 재가장애인,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정,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를 대상으로 식생활복지 및 개선을 위하여 기초적인 식재료 공급하고, 이용자가 푸드마켓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이 원하는 식품을 선택하여 자율권과 선택권을 향상시켜 자존감을 존중함과 동시에 가정 내 식비절감 효과를 기대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식품을 기증받아 업체와 저소득층을 연계하여 기부와 배분체계를 확립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복지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데 사업의 목적을 두었다. ■ 재법인원입금: 연 1,200,000원 ※ 최초수탁: 2008년 10월 20일	2019.12.31. (2014.07.01. ~2019.06.30. / 5년)	성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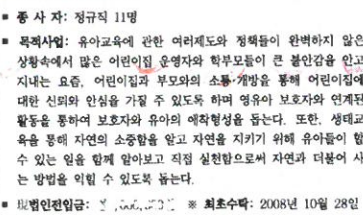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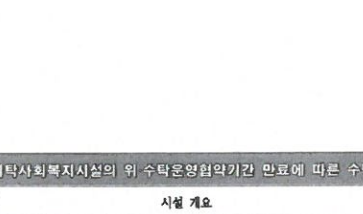
- 25 -

민간위탁사회복지시설의 위 수탁운영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운영신청(안)			
시설명 (시설장 성명)	시설 개요	위수탁운영 기간 만료일	관 할 지자체
성동구립 송파어린이집 (김가영)	■ 천하고 민주 시민의 기초를 마련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영유아들의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서비스(통일재보육, 시간연장보육, 장애통합보육)를 운영하여 보호자들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족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한다. ■ 재법인원입금: 연 1,200,000원 ※ 최초수탁: 2011년 9월 1일 	2019.06.30. (2014.07.01. ~2019.06.30. / 5년)	구로구
	■ 소재지: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 29 (건물 399.33㎡ / 지하1층, 지상 1-3층) ■ 정회원: 67명(65명) ■ 종사자: 정규직 8명 ■ 목적사업: 교육은 생활이며, 성장이고 계속되는 경험의 재구성이 다. 성장의 발판이 되기 위해 연령별 발달수준, 개별특성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해주고 적극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인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도우며 보호자의 경제·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령별 발달수준에 따른 보육프로그램진행, 영양관리, 건강관리, 위생관리, 중시지관리, 부모교육, 지역사회연계) ■ 재법인원입금: 연 1,200,000원 ※ 최초수탁: 2014년 7월 1일	2019.06.30. (2014.07.01. ~2019.06.30. / 5년)	구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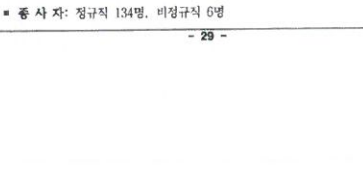
- 26 -

민간위탁사회복지시설의 위 수탁운영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운영신청(안)				
시설명 (시설장 성명)	시설 개요	위탁운영 기간 만료일	관할 지자체	
도봉구립 원당어린이집 (이 지 영)	■ 소 재 지: 서울시 도봉구 시부봉로 5길 48 (건물 1,022㎡ / 지상 1~4층) ■ 정원(현원): 97명(88명) ■ 종 사 자: 정규직 14명 	2019. 12. 31. (2017. 01. 01. ~2019. 12. 31. / 3년)	도봉구	
양천구립 한빛어린이집 (권희진)	■ 목적사업: 영영아반 운영,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연령에 따른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 생태유아교육(산책과 자연체험, 숲놀이, 텃밭가꾸기 등), 독서인성교육, 즐거운 지구살리기 환경교육을 진행하므로 궁극적으로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영유아의 생명존중, 인간존엄성, 인권존중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사람과 나눔을 실천하고 민주주의 기초를 마련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법인인정일: 2005. 1. 1. * 최초수탁: 2005년 1월 1일 	2019. 10. 20. (2014. 10. 21. ~2019. 10. 20. / 5년)	양천구	

- 27 -

민간위탁사회복지시설의 위 수탁운영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운영신청(안)				
시설명 (시설장 성명)	시설 개요	위탁운영 기간 만료일	관할 지자체	
양천구립 한빛어린이집 (권희진)	■ 소 재 지: 서울시 도봉구 시부봉로 5길 48 (건물 1,022㎡ / 지상 1~4층) ■ 정원(현원): 97명(88명) ■ 종 사 자: 정규직 14명 	2019. 12. 31. (2017. 01. 01. ~2019. 12. 31. / 3년)	도봉구	
강서구립 성모어린이집 (김정실)	■ 소 재 지: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3길 104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1층 (건물 255㎡ / 지상 1층) ■ 정원(현원): 59명(59명) ■ 종 사 자: 정규직 11명 ■ 목적사업: 유아교육에 관한 여러제도와 정책들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어린이집 운영자와 학부모들이 큰 불안감을 안고 지내는 요즘, 어린이집과 부모와의 소통·개방을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와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영유아 보호자와 연계된 활동을 통하여 보호자와 유아의 애착형성을 돕는다. 또한, 생태교육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자연을 지키기 위해 유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알아보고 직접 실천함으로써 자연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 법인인정일: 2008. 10. 28일 * 최초수탁: 2008년 10월 28일 	2019. 06. 30. (2016. 07. 01. ~2019. 06. 30. / 5년)	강서구	
구로구립 해트어린이집 (이상희)	■ 소 재 지: 서울시 구로구 천왕로9(천왕이편하루스5단지) 605동 1층 (건물 224.29㎡ / 지상 1층) ■ 정원(현원): 43명(37명) ■ 종 사 자: 정규직 8명 ■ 주요사업: 영유아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하여 저녁 양육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사회적 현 	2019. 09. 30. (2014. 10. 01. ~2019. 09. 30. / 5년)	구로구	

- 28 -

민간위탁사회복지시설의 위 수탁운영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운영신청(안)				
시설명 (시설장 성명)	시설 개요	위탁운영 기간 만료일	관할 지자체	
구로구립 해트어린이집 (이상희)	■ 소 재 지: 서울시 구로구 천왕로9(천왕이편하루스5단지) 605동 1층 (건물 224.29㎡ / 지상 1층) ■ 정원(현원): 43명(37명) ■ 종 사 자: 정규직 8명 ■ 주요사업: 영유아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하여 저녁 양육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사회적 현 	2019. 09. 30. (2014. 10. 01. ~2019. 09. 30. / 5년)	구로구	
양천구립 어르신요양센터 (Sr. 이인자)	■ 소 재 지: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26 (건물 2,533.93㎡ / 지하 3층 / 지상 5층 / 3인실: 17개, 4인실: 18개) ■ 정원(현원): 요양원 80명(80명), 데이케어센터 21명(21명) ■ 종 사 자: 정규직 45명, 비정규직 23명 ■ 목적사업: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에게 의료·보건·복지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정서적 안정, 신체적 재활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사회·사회의 협력에 의한 사회통합 문화형성 및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법인인정일: 2011. 1. 1. * 최초수탁: 2011년 1월 1일 	2019. 12. 31. (2017. 01. 01. ~2019. 12. 31. / 3년)	양천구	
서초구립 노인요양원 (한예선)	■ 소 재 지: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21 (건물 5,698.30㎡ / 지하 2층, 지상 1~4층 / 2인실: 4개, 4인실: 48개) ■ 정원(현원): 200명(200명) ■ 종 사 자: 정규직 134명, 비정규직 6명 	2020. 01. 12. (2017. 01. 13. ~2020. 01. 12. / 3년)	서초구	

- 29 -

민간위탁사회복지시설의 위 수탁운영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운영신청(안)				
시설명 (시설장 성명)	시설 개요	위탁운영 기간 만료일	관할 지자체	
서초구립 노인요양원 (한예선)	■ 목적사업: 최고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후의 삶의 질 향상, 어르신들이 "자기 삶의 주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부양가족들의 부양부담 감소 및 가족생활 지원, 지역사회 노인복지 발전 기여한다. ■ 법인인정일: 2010. 6. 30일 * 최초수탁: 2010년 6월 30일 	2019. 06. 30. (2010. 6. 30. ~2019. 06. 30. / 9년)	서초구	

법인인정일 기준의 경우
법인인정일은 이전 위 수탁운영 협약 체결시에 준하여 지내며, 단, 지자체 및 시설고유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 **의장 유결론** : 임원분들께서는 제6호 의안에 대하여 집의 또는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이사와 감사는 제6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한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 및 재정으로 제6호 의안인 민간위탁사회복지시설의 위 수탁운영 협약 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운영신청(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한다.]

제7호 의안: 법인 「임원」 중임 (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유결론** : 제7호 의안인 법인 「임원」 중임(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박경근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박경근** : 제7호 의안인 법인 「임원」 중임(안) 승인 요청 건으로 임인실 감사님의 임기가 오는 2019년 2월 1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본 회 「정관」 제33조 임원, 제15조(임원의 선임 등) 제2항 「감사 중 1인은 서울대교구 관리국장 신부, 기타 이사는 <중략> 대표이사가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임한다.」에 근거하여 임인실 감사님의 중임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이하 자료 참조)

- 30 -

법인 「원원」 중임 (안)			
임원구분	성명	예정 임기	약 력
감사	임인섭 (1962.09.22.)	2019.02.17. 2021.02.17. (2년)	- 현 천주교 서울대교구 판리국장 - 서울성모병원 행정부원장 - 여의도성모병원 행정부원장 - 천주교 서울대교구 6지구 지구장
※ 최초 선임일 : 2015.02.17. ※ 감사 임기: 2년			
[근거규정] 본 회 「정관」 일 부 발췌 제3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선임 등) ② 감사 중 1인은 서울대교구 판리국장신부가, 기타 이사는 <중대> 대표 이사가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취임한다.			

○ **의장 유경춘** : 임원분들께서는 제7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이사와 감사는 제7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한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제정으로 제7호 의안인 법인 임원 중임(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한다.]

II 제8호 의안 : 법인 산하 「어린이집 공동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승인 요청의 건

○ **의장 유경춘** : 제8호 의안인 법인 산하 「어린이집 공동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박경진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임이사 박경진** : 제8호 의안인 법인 산하 「어린이집 공동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승인 요청 건으로 본 자료는 순차별 법인 자문노무사(현 법인 운영위원 활동 중)의 검토를 통한 자문내용을 반영해 수정·보완된 안임을 안내드리며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공동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 제정 : 2012년 제1차 임시이사회(2012.06.19. 개최) 「본아별 공동운영규정」 제정	
[제1차] 개정 2015년 제1차 임시이사회(2015.05.29. 개최) 「어린이집 공동운영규정」 일부 개정 [제2차] 개정 2015년 제2차 임시이사회(2015.08.28. 개최) 「어린이집 공동운영규정」 일부 개정 [제3차] 개정 2018년 정기이사회(2018.02.23. 개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법인사무국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운영규정 개정 [제4차] 개정 2018년 제3차 임시이사회(2018.10.31. 개최) 「어린이집 공동운영규정」 일부 개정	

- 31 -

「어린이집 공동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 개정 사유 1. 지난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어린이집 공동운영규정」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 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 신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종 검토 과정 중 노동관계법령상 일부 시행된 규정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함. 2. 이에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누락된 일부 내용을 본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각 영역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개정(안)의 각 영역별 주요 내용	
영역별	개정(안) 주요 내용
1. 인사규정	남녀고용평등법 반영 제34조(육아휴직)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6개월 미만(2018.5.29. 시행)
2. 복무규정	- 기존 보건복지부 지침 내용의 세분화 제37조(임금규정의 항목) 비정규직 보육교직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경(주40시간 초과=연장근로), 취업규칙 신고의 원활화(보상휴가 부여=보육교직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2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반영 제54조(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에 따른 신설(2018.5.29. 시행) - 제54조 신설에 따른 이하 조 순연

※ 이하 「어린이집 공동운영규정」 개정(안) 본문 참조

「어린이집 공동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본문		
1. 인사 규정	현행	개정(안)
	제34조 (육아휴직) ① 어린이집은 교직원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교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29.>	제34조 (육아휴직) ① 어린이집은 교직원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교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29.>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	[변경]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6개월 미만으로 변경(2018.5.29. 시행) 반영

- 32 -

「어린이집 공동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본문

1. 인사 규정

현행	개정(안)	사유
직제시제정인"이라 한다)의 전일까지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교직원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이라 한다)의 전일까지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교직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의한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교직원	2. 변동 없음.	
3. 삭제 <제34조(육아휴직) 제3항> <개정 2015.5.29.>	3. 변동 없음.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② 변동 없음.	
③ 어린이집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교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변동 없음.	
④ 어린이집은 육아휴직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연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5.5.29. > [전문개정 2015.8.28.]	④ 변동 없음.	

2. 복무 규정

현행	개정(안)	사유
제37조 (임금의 구성항목) ① 임금은 기본급 및 제수당(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제37조 (임금의 구성항목) ① 변동 없음.	
② 임금의 호봉획정과 기본급 및 제수당	② 변동 없음.	
	③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에 대해 50% 가산, 8시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는 100% 가산하여 지급	- 비정규직 보육교직원을 포함: 주40시간을 초과하거나=연장근로로 변경 - 취업규칙 신고의 원활

1) 남녀고용평등법 및 개정 연월 지급에 관한 법률 제9조 상 차내 임원인 차내를 포함한다)의 개념을 본 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제 함.

- 33 -

○ **의장 유경춘** : 임원분들께서는 제8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이사와 감사는 제8호 의안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의안에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한다. 이후,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제정으로 제8호 의안인 법인 산하 「어린이집 공동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한다.]

- 34 -

■ 기타토의 건의 및 보고사항

⑥ 의장 유영준 : 기타 토의 및 보고사항에 대하여 박경근 상임이사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상임이사 박경근 : 기타 토의 및 보고사항으로 총2건의 보고가 있습니다. 먼저, 법인 산하 인준단체 운영을 위한 '천주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 인준단체 운영지침' 전면 개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린 후, 이어서 법인 직영시설 '강일성모노인요양원' 리모델링 공사 경과 및 추가 대출 사항 내용에 대하여 이차 자료를 참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 천주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 인준단체 운영지침 전면 개정 사항 보고

□ 전면 개정 사유

1.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지난 1998년 2월 27일 「천주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 시설·단체 등록 규정」에 의거하여 산하 사회복지시설·단체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하였음.
2. 그러나, 지난 2009년 10월 26일 '천주교 서울대학교 평신도(사학)단체 승인 및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교구 차원에서 인준신사가 실시됨에 따라 '천주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 시설·단체 등록 규정'과 그에 의거한 '등록제'는 사실상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었음. (기존 본 회 산하 등록단체는 2010년 일괄 인준 승인됨)
3. 이에 따라 본 회에서는 교구에서 인준된 단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2014년 9월 22일에 제정된 '천주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 등록단체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음.
4. 그러나 기존 '등록제'에서 교구가 주관하는 '인준심사제'로 변경됨에 따라 '천주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 등록단체 운영지침'을 '천주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 인준단체 운영지침'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이 생겼음.
5. 또한, 본 회는 인준단체가 복음적 사명에 따라 사회복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그 운영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하게 되었음.

□ 주요 내용

1. 인준단체에 대한 적용범위는 소재지가 서울대학교 관할지역 내에 위치한 단체로 하였으며,
2. 인준단체가 아닌 경우 '가톨릭' 및 '천주교'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였으며,
3. 종전에 인준단체의 유효기간이 없었는데, 본 회의 인준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기적인 심사와정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4. 종전에 인준단체 취소 사유 및 절차에 대해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으며,
5. 인준단체 취소 효과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인준단체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등록증 반납을 비롯하여, '가톨릭' 및 '천주교' 용어사용 제한, 감설 폐쇄 등의 효과가 발생함을 명시함.

- 35 -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해당 보고 건에 대하여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법인사무국에서는 향후, 산하 직영·수탁·등록시설의 원활한 관리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다.]

⑧ 상임이사 박경근 : 당부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타 보고사항으로 직영시설 '강일성모노인요양원' 리모델링 공사 경과 및 추가 대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 직영시설 「강일성모노인요양원」 리모델링 공사 경과 및 추가 대출 보고 건

□ 시설개요

시 설 명	강일성모노인요양원	시 설 장	Fr. 한정일
소 재 지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476	정 원	74명 (현원 65명)
시 설 규 모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9,205.79㎡ 2,785평 1. 강일성모노인요양원: 4,984.36㎡ / 1,508평 2. 강일동성당: 4,221.43㎡ / 1,277평		
운영목적	1. 장기요양 등급자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과 심신기능을 회복 2. 심신·정서적 기능의 안정을 위해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제공함으로써 시설 적응에 도움 3. 부양가족 및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사회적 부담 경감 4. 집단 활동을 통한 동년배들과 교류 및 접촉으로 사회적 관계 유지 및 강화		

□ 시설 리모델링 실시 사유

1. 물리치료실 협소 및 치료기 부족

- 1) 현재 1층 소체 치료실(물리, 운동, 작업치료)의 협소한 공간 및 물리치료기의 부족

2. 다목적실의 협소 및 상담 부재

- 1) 1층 다목적실이 협소하여 가족 면회, 직원교육 시(2회로 나누어) 한정적으로 사용.
- 2) 어르신 생신 잔치 및 미사, 노래교실, 댄스교실 등은 3층 복도와 이어진 홀에서 진행.
- 3) 보호자간담회 등의 큰 행사는 강일동성당의 협조를 받아 강일동성당 지하를 강당에서 이루어짐.

3. 프로그램실 부족 및 사제관의 부재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5 층	특별침실	특별침실, 다목적실(상담), 프로그램실, 사제관
4 층	2인실 9개, 4인실 1개, 3인실 1개	2인실 9개, 4인실 2개

- 36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3 층	2인실 10개, 4인실 1개	2인실 9개, 4인실 2개
2 층	2인실 7개, 4인실 2개, 3인실 1개, 특별침실	2인실 9개, 4인실 2개
1 층	사무실, 물리치료실,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	사무실, 물리치료실(2개 확장),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
지하1층	직원식당, 방재실, 주차장, 세탁실	직원식당, 방재실, 주차장, 세탁실
지하2층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 입소 정원 변경(안) (※ 정원 변경 실시 완료 예정 2019년 3월경)

원 일소 정원	입소 정원 변경(안)	내 용
74명	78명	※ 시설 리모델링으로 인한 입소 정원을 증원

□ 리모델링 공사 진행 경과보고

1. 법인 2017년 제4차 임시이사회(개최일: 12월 22일)를 통해 리모델링 공사 및 향후 운영 계획 보고 완료
2. 초기 공사 계획 범위 및 내용
 - 1) 재확보실 확충 및 5층 생활실을 다목적실 프로그램실·특별침실·사제관으로 변경
 - 2) 대출 요청 금액 4억 5천만원 산정 기준
3. 2018년 4월 20일: 설계업체 「다자인 사무실」과 설계 용역 계약 체결
4. 2018년 7월 9일: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공고로 통해 (가) 미도원을 사업자로 선정
5. 2018년 8월 31일: 기존 설계업체 설계 포기에 따라 (가) 건축사무소 예성과 설계 용역 체결
6. 2018년 10월 15일: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완성에 따른 총 공사비 5억 9백만원으로 산정
7. 2018년 11월 22일: (가) 미도원과 계약 체결
최종 공사금액 ₩441,552,000(공사비 5억 9백만원에 낙찰률 82.749%를 적용)
8. 2018년 11월 26일: 공사 착공
 - 1) 가톨릭 병동신협에서 대출금 1억원 수령에 따라 공사계약금 및 선금금 지급(20%)
 - 2) 추가 공사 계획 수립(기존 3인실 → 4인실 / 2층, 4인실 → 2인실, 2개로 분리)
 - 3) 공사 후 입주 예정 기존 계획 76명에서 78명으로 증원, 상급 침상 4식 확보
※ 이에 따라 연간 4천5백만원의 수입 증가 예상
 - 4) 추가 공사비 1천5백만원 예상되며 낙찰률(82.749%) 적용 예정
9. 2019년 2월 26일: 완공 예정

- 37 -

□ 대출금 추가 신청 사유 및 사용 계획

1. 기존 대출금 사용 계획 및 변경 내용

항목	변경 전		비고	변경 후		
	내용	금액		금액	변동 내용	비고
시설비	5층 리모델링 공사 및 1-4층 부분 보전 공사	303,000,000원	설계비 및 감리비 포함	441,500,000원	138,500,000원 증가	설계비 미포함 (상대: 28,000,000원)
	하차보수 관련 공사비	32,000,000원	집수주 하차 보수공사	32,000,000원		집행 (대체 처리) 예정
자산 취득비	서비스 질 향상 계획에 따른 자산 취득	100,000,000원	재확보실기기 추가 구입	100,000,000원		집행 예정
	업무편의를 위한 자산 취득	15,000,000원	업무용 차량(경차) 구입	15,000,000원		집행 예정
총액		450,000,000원		588,500,000원		

2. 추가 대출 신청 내용

신청금액	집행 계획	금액	비고
150,000,000원	공사비 증가금액 지급	138,500,000원	
	선 지급 설계비 일부 대체	11,500,000원	
	합 계	150,000,000원	

3. 대출금 상환 계획 : 2019년부터 매년 1억원 상환 예정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해당 보고 건에 대하여 문제점 및 특이 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법인사무국에서는 강일성모노인요양원의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어르신들과 보호자들의 안전과 편의에 불편함이 없도록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다.]

⑨ 의장 유영준 : 법인사무국 팀별 진행 업무 및 예정 업무에 대하여 박경근 상임이사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상임이사 박경근 : 팀별 진행 업무 및 예정 업무에 대하여 법인사무국 담당관들은 자료를 참조하여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무국 사회복지팀, 교육·홍보팀, 자원개발팀, 재무·행정팀, 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카리타스사회복지기업지원센터의 2018년 10월부터 12월 현재까지의 진행 업무와 2019년 2월 20일까지의 예정 업무 보고를 마치다.]

- 38 -

[의장은 출석 이사와 감사에게 본 회 법인사무국 진행 및 예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및 고전이 없음을 확인한 후 법인사무국 각 팀 담당관·담당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법인사무국과 산하 직영·수탁·등록시설의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비란다고 당부 하다.]

의장은 금번 2018년 제4차 임시이사회(총176차)에 상정된 총8개 의안, [제1호 의안]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18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과 [제2호 의안] 법인 및 산하 직영·수탁시설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 [제3호 의안] 합병 계약 승인 요청의 건과 [제4호 의안] 합병 관련 정관 변경(안) 및 사업계획서·예산(안) 승인 요청의 건, [제5호 의안] 법인 산하 직영·수탁시설 시설장 임면(안) 승(추)인 요청의 건, [제6호 의안] 민간위탁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운영 협약 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운영신청(안) 승인 요청의 건, [제7호 의안] 법인 「임원」 중임(안) 승인 요청의 건과 [제8호 의안] 법인 산하 「어린이집 공통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승인 요청의 건에 대하여 임원진의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승인한다. 또한, 차년도 이사회 개정일정에 대하여 이하와 같이 안내하고 다른 의견이 없어 참석해 주신 이 사님들과 감사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마침기도로 영광송을 바치고 폐회를 선언한다.

【2019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정기(임시)이사회 개최 예정 일정 안내】

구분	예정 일정	장소	비고
정 기 이 사 회 (총177차)	2월 20일(수) 16:00	서울대학교구청 별관 1층 대회의실	
제1차 임시이사회 (총178차)	5월 16일(목) 16:00		
제2차 임시이사회 (총179차)	11월 7일(목) 16:00		
제3차 임시이사회 (총180차)	12월 19일(목) 16:00		

※ 긴급 안전 발생시 일정 변경 등 가능

성기 의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이사 전원 기명날인하여 보관한다.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대표이사 유 경 촌

상임이사 박 경

이 사 황 경 원

이 사 심 정

이 사 오 배 경

이 사 전 재 희

이 사 정 태 호

이 사 김 명 군

이 사 김 영 주

감 사 김 기 선